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484
제 출 자	양순임 의원 외 8 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용·전보·평정·보직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1장 총칙

- 목적, 적용범위,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 (제1조~제5조)

나. 안 제2장 시험

- 임용시험 제출서류, 자격, 특전, 시험위원, 면접 등을 규정(제6조~제19조)

다. 안 제3장 임용

- 신규임용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(제20조~제26)
-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 (제27조~제31조)

라. 안 제4장 가산점

- 자격증가점, 실적가점 등 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규정 (제32조~제33조)

바. 안 제5장 임기제 공무원인사관리

-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규정 (제34조~제4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임용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3. 31. ~ 4. 6.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 제정(안)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, 적용범위,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고, 제2장 시험에서는 임용시험 제출서류, 자격, 시험위원, 면접 등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제3장 임용에서는 신규임용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승진 임용의 원칙과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, 제4장 가산점에서는 자격증가점, 실적가점 등 가산점 부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, 제5장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안건으로, 관련 규정 등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